

수원지방법원 2023. 6. 13 선고 2022가단14833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(진정명의회복, 대위청구)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선

담당변호사 박춘관, 공준식, 박일운, 이강욱

변론 종결2023. 4. 25.

판결 선고2023. 6. 13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(이하 '이 사건 각 토지'라고 한다)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자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원고 주장의 요지

원고는 C에 대하여 원금 260,000,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판결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(부산지방법원 2012가합8393).

그런데 C은 2001. 4. 17.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치르고도 사정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고, 위 각 토지의 등기명의자였던 D은 2001. 12. 19. 아들인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이후 C은 친딸인 피고와 공모하여 E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바, 피고 명의의 등기는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한 통정허위의사표시에 따른 것으로서 무효이고, 원고는 C의 채권자로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을 구한다.

2. 판단

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가 그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소유권에 기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다(대법원 2001. 8. 21. 선고 2000다36484 판결 등). 원고가 대위하는 C이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 자인지에 관하여 보건대, 원고의 주장 자체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C 명의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던 적 없고(갑 제8호증의 1, 2 각 기재에서도 확인되는 사실이다), C이 법률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도 없다.

따라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문기선

별지